

주민의견 제출서

계 획 명	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-인천	
위 치	경기도 시흥시 정왕동(시점) ~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(종점)	
계획수립권자	국토교통부	
의견제출자	성명 :	생년월일 :
	주소 :	전화번호 :
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에 관한 의견		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 장관 귀하